

의안번호	2200601
의 퇴 인	문정복 의원
회 답 일	2024.07.11.
추계번호	24C10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시나리오1의 경우 총 367억 9,600만원(연평균 73억 5,900만원), 시나리오2의 경우 총 1,455억 7,000만원(연평균 291억 1,4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안 제7조제1항)	시나리오1	7,402	6,918	7,188	7,468	7,819	36,796	7,359
	시나리오2	29,285	27,369	28,437	29,545	30,934	145,570	29,114

주: 1) 각 시나리오별로 영양교사가 추가 배치되는 학교의 재학생 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1: (초) 1,500명 초과, (중·고) 1,200명 초과
- 시나리오2: (초) 1,000명 초과, (중·고) 1,200명 초과

2)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으며,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배치될 영양교사의 인원수와 호봉 등 인건비 단가, 영양교사를 배치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의 규모 등에 따라 추계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기준 재학생 수를 초과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
- 추가 배치되는 영양교사는 전원 2급 8호봉으로 신규임용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 국·공립학교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사립학교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 비용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비용만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u>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u> ※후단 신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개정안은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 학교의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현 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추계를 위하여 추가 배치 대상 학교의 재학생 수 기준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가정
 - 시나리오1 : 초등학교 1,500명 초과, 중·고등학교 1,200명 초과
 - 시나리오2 : 초등학교 1,000명 초과, 중·고등학교 1,200명 초과
 - 2023년 교육통계에서 조사한 학생수별 학교 수 기준구간¹⁾ 등을 참고하여 시나리오를 구성
 - 추계기간 동안 학교 통폐합이나 재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학교 수가 증감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2023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가 배치 인원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여 배치 인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알 수 없으나 추계를 위하여 대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
 - 배치 대상 학교가 대규모 학교임을 고려하여 현재 1명 이상의 영양교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하며, 본 추계에서는 대상 학교마다 1명의 영양교사를

1) 2023년 교육통계의 학생수별 학교수 구간 중 1,000명 이상 구간은 1,001~1,500과 1,501이상 구간으로 나뉘어 있음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

□ 추가 배치되는 영양교사는 2급으로 전원 신규임용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 영양교사 1급 자격의 경우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년 이상 근무해야 취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²⁾, 개정안에 따라 신규임용되는 영양교사는 전원 2급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해당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영양교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호봉이 승급되어 추가제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2급 자격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법 시행일과 추가 배치되는 영양교사에 대한 선발 공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신규임용되는 영양교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 국·공립학교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나누어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의 경우 봉급, 수당 및 기관부담금으로 나누어 산출
 - 봉급은 영양교사(2급)의 기산호봉³⁾에 따라 신규 배치된 해(2026년)에 8호봉으로 하며, 이후 매년 1호봉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수당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영양교사 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그 밖에 가족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등), 연가보상비 등 다른 수당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기관부담금은 봉급 및 수당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공무원연금) 비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 연수를 받은 사람
영양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에 따라 영양교사(2급)의 기산호봉은 8호봉

결과 보고서」에 따른 인건비 대비 물건비⁴⁾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는 영양교사를 신규 배치하는 2026년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산취득비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사립학교에 영양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는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규모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에 배치되는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국가 부담금 비용만을 추계

-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수요(기준재정수요액)를 산정할 때 사립학교의 교원 수도 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이를 교부받아 사립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재정결함보조)하고 있음

－ 사립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세출(기준재정수요)에서 세입(기준재정수입)을 뺀 금액을 교부

- 이에 따라 대규모 사립학교에 영양교사가 추가로 배치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액이 증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재정결함보조의 세부적인 기준이 다르고, 개정안에 따라 영양교사 추가 배치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의 세입·세출 상황 또한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사립학교에 추가 배치되는 영양교사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비용만을 추계

－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을 추계하기 위한 영양교사의 보수는 국·공립학교 신규 배치 영양교사(2급)의 봉급 및 수당 합산액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증가분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에서 산출된 금액보다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4)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물건비에는 운영비(일반수용비·공공요금·특근매식비 등),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국·공립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국·공립학교의 영양교사 추가 배치에 따른 향후 5년간(2026~2030년)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1의 경우 총 367억 2,600만원, 시나리오2의 경우 1,454억 9,100만원으로 추계

- (추가배치인원) 시나리오1은 156명, 시나리오2의 경우 618명으로 산출됨
 - － 시나리오1은 재학생 수가 1,50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1,200명을 초과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안으로, 이에 따른 추가 배치 인원은 초등학교 103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20명 등 총 156명으로 산출
 - － 시나리오2는 재학생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1,200명을 초과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안으로, 이에 따른 추가 배치 인원은 초등학교 565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20명 등 총 618명으로 산출

[표 2] 국·공립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인원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시나리오1	103	33	20	156
시나리오2	565	33	20	6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단가 및 추가재정소요) 국·공립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5년간 시나리오1의 경우 총 367억 2,600만원, 시나리오2의 경우 1,454억 9,100만원으로 추계
 - － 영양교사 1인당 단가는 봉급, 수당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인건비와 인건비에 기본경비 비율(6.54%)을 곱하여 산출한 기본경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산취득비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자산취득비를 더하여 추계

[표 3] 국·공립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단가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호봉)		(8호봉)	(9호봉)	(10호봉)	(11호봉)	(12호봉)	—	—
인건비 (A)	봉급·수당(a)	35	37	38	40	41	191	38
	기관부담금(b)	5	5	5	5	6	26	5

	소계(A=a+b)	40	42	43	45	47	217	43
	기본경비(B=A×6.54%)	3	3	3	3	3	14	3
	자산취득비(C)	5	—	—	—	—	5	1
	단가 계(A+B+C)	47	44	46	48	50	235	47

주: 8호봉의 영양교사가 신규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기관부담금 비율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이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국·공립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비용 추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 배치 인원	시나리오1(A1)	156	156	156	156	156	—	156
	시나리오2(A2)	618	618	618	618	618	—	618
단가(B)		47	44	46	48	50	235	47
국·공립학교 추가 배치 비용	시나리오1(A1×B)	7,388	6,905	7,174	7,454	7,804	36,726	7,345
	시나리오2(A2×B)	29,269	27,354	28,422	29,529	30,918	145,491	29,0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사립학교) 향후 5년간(2026~2030년)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1의 경우 총 7,000만원, 시나리오2의 경우 7,900만원으로 추계

- (추가배치인원) 시나리오1은 8명, 시나리오2의 경우 9명으로 산출됨
 - 시나리오1은 재학생 수가 1,50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1,200명을 초과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안으로, 이에 따른 추가 배치 인원은 중학교 1명, 고등학교 7명 등 총 8명으로 산출
 - 시나리오2는 재학생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1,200명을 초과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안으로, 이에 따른 추가 배치 인원은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7명 등 총 9명으로 산출

[표 5] 사립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인원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시나리오1	—	1	7	8
시나리오2	1	1	7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단가 및 추가재정소요) 사립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5년간 시나리오1의 경우 총 7,000만원, 시나리오2의 경우 7,900만원으로 추계
 - 국·공립학교에 추가 배치되는 영양교사(2급)의 봉급 및 수당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사립학교 추가 배치 인원 1인당 보수를 곱하고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비율(3.706%⁵⁾)을 곱하면 사립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비용을 산출함

[표 6] 사립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비용 추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 배치 인원	시나리오1(A1)	8	8	8	8	8	—	8
	시나리오2(A2)	9	9	9	9	9	—	9
1인당 보수(B)		47	44	46	48	50	235	47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비율(C)		3.706%	3.706%	3.706%	3.706%	3.706%	3.706%	3.706%
사립학교 추가 배치 비용	시나리오1(A1×B×C)	14	13	14	14	15	70	14
	시나리오2(A2×B×C)	16	15	15	16	17	79	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706%를 적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개인부담금)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영양교사 추가 배치 비용을 합하면 추가재정 소요는 5년간(2026~2030년) 시나리오1의 경우 총 367억 9,600만원(연평균 73억 5,900만원), 시나리오2의 경우 총 1,455억 7,000만원(연평균 291억 1,400만원)으로 추계

[표 8]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비용 합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국·공립학교 추가 배치 비용	시나리오1 (A1)	7,388	6,905	7,174	7,454	7,804	36,726	7,345
	시나리오2 (A2)	29,269	27,354	28,422	29,529	30,918	145,491	29,098
사립학교 추가 배치 비용	시나리오1 (B1)	14	13	14	14	15	70	14
	시나리오2 (B2)	16	15	15	16	17	79	16
추가 배치 비용 합계	시나리오1 (A1+B1)	7,402	6,918	7,188	7,468	7,819	36,796	7,359
	시나리오2 (A2+B2)	29,285	27,369	28,437	29,545	30,934	145,570	29,114

주: 1) 각 시나리오별로 영양교사가 추가 배치되는 학교의 재학생 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1: (초) 1,500명 초과, (중·고) 1,200명 초과
 - 시나리오2: (초) 1,000명 초과, (중·고) 1,200명 초과
 2)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으며,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배치될 영양교사의 인원수와 호봉 등 인건비 단가, 영양교사를 배치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의 규모 등에 따라 추계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기준 재학생 수를 초과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
 - 추가 배치되는 영양교사는 전원 2급 8호봉으로 신규임용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 국·공립학교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사립학교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 비용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급에 대한 국가부담금 비용만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영양교사가 추가 배치되는 학교의 규모를 포함한 배치계획과 자격요건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